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3서식] <개정 2019. 9. 27.>

상 해 진 단 서

등록번호	
연 번 호	

환자의 성명		환자의 주민등록번호	
환자의 주소	(전화번호 :)		
병 명 [ ] 임상적 추정 [ ] 최 종 진 단	(주 질병・부상) (부 질병・부상)		질병분류기호
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	년 월 일	진단 연월일	년 월 일
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			
상해 부위와 정도			
입원의 필요 여부			
외과적 수술 여부			
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			
통상활동의 가능 여부			
식사의 가능 여부			
상해에 대한 소견			
치 료 기 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진단일부터 일간)		
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			
입원・퇴원 연월일	입원일: 년 월 일부터	퇴원일: 년 월 일까지	
비 고			

「의료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 명칭:

주소:

[ ]의사 [ ]치과의사 [ ]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작 성 방 법

1.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, 기간 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국립・공립대학 학생증, 군무원증, 건강보험증,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(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・초본,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)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2. "병명"란에는 "임상적 추정"과 "최종진단" 중 택일하여 [ ]에 √ 표시를 하고,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,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,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